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8
------	-----

2019. 8. 29.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6일, 김소영 의원(찬성의원 9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8.29.)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사무내용 중 체육시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나.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체육시설 운영'을 추가(안 제6조제3호)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에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6조제3호에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9. (생략)

- 현재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총 385건으로, 이 중 문화·관광분야는 23건이며, 체육시설운영 사무는 3건임.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중 체육시설운영 사무 〉

연번	실국명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내용	위탁업체/기간
1	관광체육국	목동실내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사용 관리 운영	(주)와이키키신사점 /2019.7.~현재
2	관광체육국	잠실야구장	잠실야구장 사용 관리 운영	(주)LG스포츠-(주)두산스포츠 /2000.1.1.~현재
3	관광체육국	효창운동장	효창운동장 사용 관리 운영	서울시 축구협회/2009.7.1.~현재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9개로¹⁾,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3개 시설 외에 서울시 직영과 서울시시설공단 대행이 각각 3개소임[첨부자료].
- 민간위탁의 사무내용 중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체육시설’을 추가해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통한 체육시설 운영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입법효과가 있음.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잠실종합운동장 중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야구장, 풋살구장
2. 장충체육관
3. 목동운동장 중 야구장, 실내빙상장, 다목적구장
4. 뚝섬승마훈련원
5. 서울월드컵경기장
6. 삭제
7. 효창운동장(노외주차장 포함)
8. 구의야구공원
9. 신월야구공원
10. 서남권 돛구장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제3호 중 “문화·관광시설”을 “문화·체육·관광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u>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u> 사무</p> <p>4. ~ 9. (생 략)</p>	<p>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문화·체육·관광시설</u>----- ---</p> <p>4. ~ 9. (현행과 같음)</p>